| 발 간 등 록 번 호 |
| --- |
| 11-1170000-000557-01 |

# 2017년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법제처

# 일러두기

1. 이 책자는 2014년도에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과 2015년도 및 2016년도에 각각 발간한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에 이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개선한 사례를 알기 쉽게 소개하여, 이와 같은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유도하고, 유사한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한 책자입니다.

2. 이 책의 사례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조례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의 효과가 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법령 소관 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3. 사례는 크게 문제 유형별(① 상위법령 위반, ②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③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과 주요 분야별(① 공유재산・계약, ② 지방보조금, ③ 기금・특별회계, ④ 가산금・과태료・지방세, ⑤ 위원회)로 나누어 정리하였습니다.

4. 이 책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해당하는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조례를 정비하여 정부 규제개혁의 체감도가 지역 구석구석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Ⅰ. 문제 유형별 사례 ····· 1

제1장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 3

1.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 보장 ····· 5
2.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 7
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명확화 ····· 10
4.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 12
5.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 14
6.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 17
7.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 19
8. 분묘의 점유면적 확대 ····· 22
9.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 24
10.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 확대 ····· 31
11.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 34
12.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상향 ····· 36

제2장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 39

13. 불합리한 위탁 제한 철폐 ····· 41
14.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 삭제 ····· 43
15.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 45
16. 작은 도서관의 운영 기준 등 완화 ····· 47
17. 공개공지 설치 건축주에 대한 의무 부과 철폐 ····· 53
1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완화 ····· 57
19.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완화 ····· 59

제3장 상위법령 제 · 개정 사항 미반영 ····· 63

20.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 65
21.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 67
22.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 ····· 70
23.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 ····· 72
2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 74
25.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 76
26.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 78
27.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하향 조정 ····· 80
28.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마련 ····· 82
29. 수의직공무원 수당 지급 상한 확대 ····· 84
30.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마련 ····· 86

Ⅱ. 주요 분야별 사례 ····· 89

제1장 공유재산 · 계약 분야 ····· 91

31.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 확대 ····· 93
32.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 ····· 95
33. 행정재산 사용료 미반환 관행 개선 ····· 97
3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 99
35.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 101
36.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 ····· 103
37.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철폐 ····· 105
38.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이자율 조정 ····· 107

제2장 지방보조금 분야 ····· 111

39.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사유 개선 ····· 113
40. 법령상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개선 ····· 115

제3장 기금 · 특별회계 분야 ····· 117
41.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 119
42. 기금 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 120
43. 기금 ·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 확보 ····· 121
44. 기금 ·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 123

제4장 가산금 · 과태료 · 지방세 분야 ····· 125
45.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철폐 ····· 127
46. 가산금 부과금액 완화 ····· 129
47. 법령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 131
48.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 ····· 134

제5장 위원회 분야 ····· 137
49. 법령상 위원회의 운영 규정 마련 ····· 139
50.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 141

부록 ····· 143

# I



# 문제 유형별 사례

제1장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제2장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제3장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 제 1 장

# 상위법령 위반(위임범위 일탈, 불일치 포함)

1.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 보장
2.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명확화
4.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5.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6.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7.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8. 분묘의 점유면적 확대
9.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10.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 확대
11.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12.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상향

# 1 의용소방대의 안정적 운영 보장

조례내용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대장 등의 임기) ① 지역대장 및 전문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지역대장, 전문대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장이 임명한다.

## Ⅰ. 문제점

○ 의용소방대 대장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 부대장의 경우에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하는 것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제10조제2항, 2017.8.29. 공포·시행)되어 의용소방대 부대장은 횟수에 관계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부대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의용소방대의 부대장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의용소방대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 보장

### 관련 법령

**○ 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83호, 2014.7.29. 제정]**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제7호, 2017.8.29. 일부개정]**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① 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부대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용소방대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2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 개선

조례내용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 등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포함)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속설비 사용료는 따로 정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도,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기 및 행사를 포함한다.)
   나. 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다.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 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아.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자. 시를 연고로 하는 실업팀 및 프로팀의 체육경기
   차.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운동부 훈련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주관 경기·행사
3. 100분의 30 감면
   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다. 〈삭제 2015.12.29.〉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마. 〈삭제 2017.3.31.〉
   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어린이, 불우청소년, 한 부모가정아동,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사. 〈삭제 2015.12.29.〉
   아. 셋째자녀 이상을 둔 경기 아이-플러스(i-plus)카드 소지자의 자녀. 다만, 강습 프로그램 사용료에 한한다.
   자.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4. 〈삭제 2015.4.17.〉

## Ⅰ. 문제점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행사·활동(도 및 시의 대표 선수들의 강화훈련 및 경기,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훈련)에 대해서도 전액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간단체 또는 민간 체육행사 등과 비교할 때 상위법령에 대한 특례를 허용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해당 행사·활동에 대하여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감경률을 규정하여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대한 특혜 소지를 개선

## 관련 법령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 · 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2016.8.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 3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 명확화

조례내용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조정의 거부) 위원회는 분쟁의 신청이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조정을 반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인가·허가·조정 등을 받은 사항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

## Ⅰ. 문제점

○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규정과 유사한 사항을 각 호의 규정으로 열거하고 있어 위원회의 자율적인 조정 거부 결정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분쟁 조정을 원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조정 기회가 축소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

## Ⅱ. 개선방안

○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거부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주민의 분쟁 조정 기회의 확대를 통한 주민의 권익 증진

## 관련 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40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 확대

조례내용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함안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개설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2. 개설지역(주소)
3. 영업개시예정일
4.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5. 매장면적(㎡)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함안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여야 한다.

## Ⅰ. 문제점

○ 대규모점포가 인근 골목 상권이나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준비기간을 더 보장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제8조의3, 2016.1.6. 공포, 2016.7.7. 시행)되어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가 영업 개시 "3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영업개시 30일 전까지로 축소된 기간을 규정하여 규제로 작용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대규모점포의 개설계획 예고시기를 영업 개시 60일 전으로 개정하여 인근 골목 상권 및 전통시장에 대한 보호 강화

## 관련 법령

**○ 구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510호, 2015.11.20. 일부개정]**

제8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3739호, 2016.1.6. 일부개정]**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 지역 및 시기 등을 포함한 개설계획을 예고하여야 한다.

# 5 현수막의 표시기간 확대

조례내용

「○○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 범위 확대를 위하여 민원용은 7일 이내, 행정용은 10일 이내, 가로등 현수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현수막의 게시기간 등) ① 영 제8조제3호에 따른 현수막의 게시기간은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이용 범위 확대를 위하여 10일 이내로 한다.
②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게시기간과 관계없이 즉시 철거하여 폐기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서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0일 이내로 축소하고 있어 주민의 옥외광고물 이용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현수막의 표시기간을 15일 이내로 개정하여 주민의 옥외광고물 이용권한을 보장하고 사업자의 자유로운 영업 환경을 조성

## 관련 법령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軌道)·하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
7. 그 밖에 아름다운 경관과 도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제6호의 교통수단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에 걸쳐 운행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통수단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해당 교통수단이 등록된 주소지의 시장등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이 항에서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관광지·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⑤ 시장등(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은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기준의 완화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면적·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별표 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 광고물의 종류 | 표시기간 |
|---|---|
| 1. 벽면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2. 삭제 〈2016. 7. 6.〉 | |
| 3. 돌출간판 | 3년 이내 |
| 4. 공연간판 | 2년 이내 |
| 5. 옥상간판 | 3년 이내 |
| 6. 지주 이용 간판 | 3년 이내 |
| 6의2. 입간판 | 3년 이내 |
| 7. 현수막 |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현수막 : 1년 이내<br>•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br>• 그 밖의 현수막 : 15일 이내<br>• 현수막 게시시설 : 3년 이내 |
| 8. 애드벌룬 | • 공중에 띄우는 경우 : 60일 이내<br>•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 3년 이내 |
| 9. 벽보 | 15일 이내 |
| 10. 전단 | 15일 이내 |
|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3년 이내 |
|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 |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비행선은 제외한다) | 3년 이내 |
| 나. 「항공법」에 따른 비행선 | 30일 이내 |
| 14. 선전탑 | 30일 이내 |
| 15. 아치광고물 | 30일 이내 |
|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 3년 이내 |
| 비고 :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 |

# 6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조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2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을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폐업한 사실을 현지 확인하고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하여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옥외광고물등 관리대장
2.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영업소를 방문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별지 제11호서식의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 Ⅰ. 문제점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1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2016.1.6. 공포, 2016.7.7. 시행)되어 옥외광고사업의 폐업 후 7일 이내 등록증 반납의무, 옥외광고사업 등록번호 표시의무 및 장부 비치 의무가 폐지되었으나, 여전히 조례에서는 이를 규정하고 있어 주민이 옥외광고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지 못함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옥외광고사업 등록자에 대한 규제 규정을 삭제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편의를 증진

## 관련 법령

**○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법률 제12844호, 2014.11.19.]**

제1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옥외광고업자가 폐업하였을 때에는 폐업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등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옥외광고업자가 제3항에 따라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등은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업자는 영업소 안에 광고물등의 설치 종류·장소 및 시기, 그 밖에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장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옥외광고업자는 특별자치도·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등록번호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영업소별로 표시하여야 한다.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11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을 갖추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후에 시장등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하였다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6.〉

④ 삭제 〈2016.1.6.〉

⑤ 삭제 〈2016.1.6.〉

⑥ 삭제 〈2016.1.6.〉

⑦ 시장등은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옥외광고사업자로 하여금 그 영업에 관한 서류 제출 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영업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자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검사하는 직원은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7 야생동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례내용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보상기준) ① 상해를 입었을 때의 보상액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최대 500만원까지로 한다.

② 사망한 경우의 보상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1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 지급은 연 1회에 한정한다.

## Ⅰ. 문제점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4-77호) 제14조에서는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달리 야생동물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전까지의 치료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경작지에 대한 피해보상금은 연 1회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자 및 농업·임업·어업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를 축소할 우려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과 다르게 피해보상액 범위를 축소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정당한 피해보상 실현

## 관련 법령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제19조제1항에 따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또는 제26조에 따른 시·도보호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5.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7. 그 밖에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기준과 절차, 제2항에 따른 피해보상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기준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필요한 울타리·방조망(防鳥網)·경음기(警音器)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피해보상기준 :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임산물·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환경부고시 제2014-77호, 2014.5.1.]**

제1조(목적) 이 규정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하 "피해예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를 입은 자와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입은 자에게 보상하여 주기 위한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피해보상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등 경작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농작물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 이내로서 농작물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액은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의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 8 분묘의 점유면적 확대

조례내용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6조(분묘의 사용면적 제한)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6.6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합장의 경우에는 9.9제곱미터 이내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18조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에서 초과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서는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등 점유면적의 상한을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 15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분묘 등 점유면적의 상한을 6.6제곱미터(합장의 경우 9.9제곱미터)로 축소하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법령에서 정한 상한까지 확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설치 편익을 행정편의적으로 제한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분묘의 점유면적을 확대하여 장사시설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주민 편익 보장

## 관련 법령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①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 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 ·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 ·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9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조례내용

「○○군 군계획 조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군 도시계획 조례」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 단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변경
2. 가구(영 제4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3. 획지면적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4. 건축물높이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5.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
6. 군관리계획결정 내용중 면적산정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7.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규칙 제3조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시 도시계획조례」

제6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으로서 영 제25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영 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영 제46조제7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의 변경
10. 법률 제6655호 부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된 경우(영 제47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12.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Ⅰ. 문제점

○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되, 기초조사, 주민의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제25조제4항제14호, 2016.5.17. 공포·시행)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의 효과를 제한할 우려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을 확대하여 지구단위계획 계획 추진의 효율성 도모

##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4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만 해당된다)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결정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0호, 2016.2.11. 일부개정]**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녹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가. 운동장, 체육시설
   나. 삭제 〈2016.2.11〉
   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⑤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72호, 2016.5.17. 일부개정]**

제25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의 사항과 관계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관리계획
3. 2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도로 :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공원 및 녹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
      2)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5. 도시지역외의 지역에서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군계획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되기 전의 도시·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다른 도시·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가. 운동장, 체육시설
   나. 삭제 〈2016.2.11〉
   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6의3. 문화시설(제2조제3항에 따라 세분된 문화시설을 말하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문화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문화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 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2. 가구(제42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별도의 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3. 획지면적의 3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5. 제46조제7항제2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6. 건축선의 1미터 이내의 변경인 경우
7. 건축선 또는 차량출입구의 변경으로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 또는 제18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경우
8.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9.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용도지구·도시·군계획시설·가구면적·획지면적·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1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인 경우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 또는 시·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 10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 확대

조례내용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는 추정 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공사중 책임감리자가 선정된 공사는 제외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 · 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 · 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공사
5. 보도블럭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공사
8. 공중화장실공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Ⅰ.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제60조제1항제10호 및 제60조제2항, 2016.9.13. 공포 · 시행)되어 주민참여 공사의 대상에 공원 공사를 추가하고, 공사의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이면 주민참여 감독공사를 하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이 배제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대상을 확대하여 주민참여 감독공사의 활성화 도모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감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이하 "주민참여감독자"라 한다)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③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감독범위, 자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감독을 하는 자는 감독조서(監督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그 상한금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91호, 2016.9.13. 일부개정]**

제60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군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 11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

조례내용

「영유아 보육 조례」

제19조(시립어린이집의 설치) 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등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영아·장애아(장애아는 법 제12조에 따라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이하 "취약보육"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립어린이집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Ⅰ. 문제점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제12조, 2013.8.13. 공포, 2017.3.14. 공포)되어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대상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및 '산업단지 지역'이 추가되었음에도,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공립어린이집 설치 순위에 해당 지역이 제외될 우려가 있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혼란 초래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을 확대하여 취약지역에 영유아 보육 지원이 균형 있게 제공되도록 개선

## 관련 법령

**○ 구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0983호, 2011.8.4. 타법개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구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2068호, 2013.8.13. 일부개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597호, 2017.3.14. 일부개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법 제12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란 500세대를 말한다.

# 12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상향

조례내용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군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정원의 100분의 3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Ⅰ. 문제점

○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개정(제27조, 2016.12.27. 공포, 2017.1.1. 시행)되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1천분의 32 및 1천분의 34)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으로 규정하여 공무원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규제로 작용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의무고용률을 상향하여 장애인 고용촉진을 활성화

## 관련 법령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1570호, 2012.12.18. 일부개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3(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3 미만이면 100분의 6)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법률 제14500호, 2016.12.27. 일부개정]**

제2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1.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 1천분의 32
2. 2019년 이후 : 1천분의 3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신규채용 인원에 대하여 장애인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연도 비율 미만이면 그 비율의 2배) 이상 채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공개채용을 하지 아니하고 공무원을 모집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은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등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본문에 규정된 공안직군 공무원 등에 대하여도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채용시험 및 모집에 응시하는 장애인의 응시 상한 연령은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3세, 그 밖의 장애인인 경우에는 2세를 각각 연장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소속 각급기관의 공무원 채용계획을 포함한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과 그 실시 상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의 장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장애인 공무원 채용계획을 제출한 자에게 그 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른 고용 의무의 이행 실적이 현저히 부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

제 2 장

#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13. 불합리한 위탁 제한 철폐
14.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 삭제
15.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16. 작은 도서관의 운영 기준 등 완화
17. 공개공지 설치 건축주에 대한 의무 부과 철폐
1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완화
19.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완화

# 13 불합리한 위탁 제한 철폐



조례내용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의한 청소년단체나 군수가 설립한 청소년육성재단"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단체가 제24조(위탁의 취소 등)의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시설 수탁자가 될 수 없다.

③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미리 위탁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소년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때에는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Ⅰ. 문제점

○ 「청소년활동 진흥법」상 근거 없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가 일정한 위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때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수탁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자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한

## Ⅱ.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는 위탁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

##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예정) 청소년활동 진흥법 [법률 제15211호, 2017.12.12. 공포, 2018.6.13. 시행, 일부개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12.12.]

# 14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 삭제



조례내용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실적보고)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에서는 일정한 사유(다른 용도로 사용 등)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법령과 다른 사유('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를 이유로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이 지방보조금 사업자를 과도하게 통제

## Ⅱ.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는 보조금 교부(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방보조사업의 공정한 운영 보장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32조의6제3항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결정 취소의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등 보조금 지출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5 공설장사시설의 이용 허가를 신고로 전환



조례내용

「○○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사용허가 등)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 등)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Ⅰ. 문제점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서는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사시설을 설치·조성·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사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

## Ⅱ.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는 공설장사시설 이용허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장사시설 이용 편익 증진

## 관련 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금액은 토지가격, 시설물 설치·조성비용, 지역주민 복지증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주민과 다른 지역의 주민을 구분하여 달리 부과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이나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유림이나 그 밖의 국유지에 자연장지를 조성·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부과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16 작은 도서관의 운영 기준 등 완화



조례내용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자의 자격과 직무) ① 작은도서관에서는 운영자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 수료자
4. 지역여건상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가 없을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적합한 사람을 추천할 수 있다.

③ 운영자는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 및 프로그램의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 세부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임명 및 위촉 해제) ① 운영자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원장이 선정한다.

② 운영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근무상태 불량으로 작은도서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물의를 빚을 경우
2. 운영경비·정산·자료제출 등을 이행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못한 경비집행을 하였을 경우
3.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제9조(운영인력)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은 자원봉사자를 포함 2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시간)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5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적·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휴관) ① 작은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2. 도서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일

제1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모든 작은도서관에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 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예산 및 신간도서 확보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작은도서관 관할 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성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지역주민으로 한다.
⑤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궐 위촉토록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한다.
⑧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⑨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Ⅰ. 문제점

○ 조례에서 모든 작은 도서관(사립 포함)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밖에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도서관 운영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는 등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상 사립 작은 도서관 등록기준(시설·인력기준) 및 운영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작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려는 주민에게 규제로 작용

## Ⅱ.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는 작은 도서관 운영기준 등을 삭제하여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자의 부담 완화

## 관련 법령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작은도서관의 조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도서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작은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도서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제5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보관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자료의 교환 및 이관은 도서관을 폐관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과 제2항의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 도서관자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서 등) ①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 및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직원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교육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0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사서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사서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서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서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가. 공공도서관

1) 공립 공공도서관

| 봉사대상 인구 (명) | 시설 | | 도서관자료 | |
|---|---|---|---|---|
| | 건물면적 (제곱미터) | 열람석 (좌석 수) | 기본장서 (권) | 연간증서 (권) |
| 2만 미만 | 264 이상 | 60 이상 | 3,000 이상 | 300 이상 |
| 2만 이상 5만 미만 | 660 이상 | 150 이상 | 6,000 이상 | 600 이상 |
| 5만 이상 10만 미만 | 990 이상 | 200 이상 | 15,000 이상 | 1,500 이상 |
| 10만 이상 30만 미만 | 1,650 이상 | 350 이상 | 30,000 이상 | 3,000 이상 |
| 30만 이상 50만 미만 | 3,300 이상 | 800 이상 | 90,000 이상 | 9,000 이상 |
| 50만 이상 | 4,950 이상 | 1,200 이상 | 150,000 이상 | 15,000 이상 |

2) 사립 공공도서관

1)의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작은도서관

| 시설 | | 도서관자료 |
|---|---|---|
| 건물면적 | 열람석 | |
| 33제곱미터 이상 | 6석 이상 | 1,000권 이상 |

비고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시설 | | 도서관자료 | |
|---|---|---|---|
| 건물면적 | 기계・기구 | 장서 | 녹음테이프 |
| 66제곱미터 이상(이 중 자료열람실 및 서고의 면적이 45퍼센트 이상일 것) |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br>2. 점자인쇄기 1대 이상<br>3. 점자타자기 1대 이상<br>4. 녹음기 4대 이상 | 1,500권 이상 | 500점 이상 |

비고 :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
|---|
|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 분야 자료가 3천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점) 이상이어야 한다. |

다.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에 따른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 외의 도서관

별도의 시설 및 자료 기준 없음

[별표 2]

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 구분 | 배치기준 |
|---|---|
|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 도서관 건물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사서 3명을 두되,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330제곱미터마다 사서 1명을 더 두며, 장서가 6천 권 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6천 권마다 사서 1명을 더 둔다. |
| 작은도서관 |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둘 수 있다. |
| 장애인도서관 |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를 1명 이상 둔다. |
| 전문도서관 |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 배치 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

# 17 공개공지 설치 건축주에 대한 의무 부과 철폐



조례내용

「건축 조례」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 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
3. 최소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며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
4.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벤치(긴 의자), 식수대, 조형물 등을 설치한다.
5.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6호 서식의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Ⅰ. 문제점

○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서는 건축주가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3항에서는 공개공지에 설치할 시설의 종류·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에게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건축주에게 과도한 부담 초래

## Ⅱ.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는 관리대장 제출 규정을 삭제하여 지역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주의 부담 완화

## 관련 법령

### ○ 건축법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른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에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5.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6.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7. 「도로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12. 삭제 〈2009.6.9.〉

⑤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 공지나 공개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014.10.14.〉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사용승인신청)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건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8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완화



조례내용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활동보조인"이란 법 제55조에 따라 활동보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란(이하 "자립생활지원센터"라 한다) 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10조(센터의 운영기준) 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이여야 하고 직원의 1/4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한 장애인이어야 한다.

②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며, 위원회 과반수는 장애인이어야 한다. 단, 장애인위원은 성별과 장애정도, 장애유형을 고려해야 한다.

③ 운영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은 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센터의 정관으로 정한다.

## Ⅰ.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1항에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 확보, 센터장 이외 직원 중 1인 이상의 장애인 확보 등)을 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센터의 장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하고, 직원의 4분의 1 이상이 장애인이어야 하며, 동료상담 업무 직원은 모두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 법령상 운영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센터 운영자에게 과도한 부담 및 규제로 작용

## Ⅱ. 개선방안

○ 법률의 내용과 다르게 강화된 운영기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 도모

## 관련 법령

### ○ 장애인복지법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기준) ①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의 의사결정, 서비스제공 및 운영 등은 장애인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2. 자립생활센터는 장애동료 상담전문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
3. 자립생활센터는 법 제54조제1항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야 한다.
   가.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등 장애인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
   나. 모든 유형의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참여적이고 통합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정보제공 및 의뢰 등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의 차별 해소 및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라.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제공

②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립생활센터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제1항의 운영기준에 대한 성과를 중시해야 한다.

③ 자립생활센터는 조직 운영, 사업 수행, 재정 확보, 운용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록 및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9 건축허가 등 업무대행 건축사의 결격사유 완화



조례내용

「○○군 건축 조례」

제24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한다.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각각 해당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⑤ 군수는 화천군 지역에 등록된 건축사와 협의하여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한다.

⑥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5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화천군 지역에 등록된건축사와 협의하여 제6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군 건축 조례」

제26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허가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시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 사용승인 신청서를 접수하여 허가권자가 현장조사업무 대행자를 지정한 후

④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의 대행자는 군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자에 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업무대행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를 한 때 또는 동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 Ⅰ. 문제점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건축허가·사용승인 등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선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조례에서는 이와 다르게 업무대행건축사의 요건을 추가(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건축사사무소 등록 소재지가 관할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등)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건축사의 영업범위를 과도하게 제한

## Ⅱ.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는 업무대행건축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건축사의 공정한 경제활동을 보장

## 관련 법령

### ○ 건축법

제27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 건축법 시행령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
2.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와 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 제 3 장

#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20.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21.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22.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
23.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
2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25.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26.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27.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하향 조정
28.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마련
29. 수의직공무원 수당 지급 상한 확대
30.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마련

# 20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규정

조례내용

「시세감면 조례」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 Ⅰ. 문제점

○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제75조의2제1항, 2016.12.27. 공포, 2017.1.1・시행)되어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16년말'까지 적용하던 것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9년말'까지 적용하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8년부터는(법률 제14477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감면율 적용) 해당 부동산의 과세범위에 대한 주민 혼란을 초래하고 법령이 잘못 집행될 우려

## Ⅱ. 개선방안

○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이 가능하고 과세 부과 업무의 집행상 혼란 방지

## 관련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3637호, 2015.12.29. 일부개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4477호, 2016.12.27. 일부개정]**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

# 21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향

조례내용

「○○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건별로 신고인에게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1을 따른다.
②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일 년 600만원으로 한다.

[별표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4조 관련)

(단위 : 원)

| 위반 행위 | 포상금 | 비고 |
|---|---|---|
|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제3조제1호) | 100,000 | |
|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제3조제2호 및 제3호) | 150,000 | |
| 3.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제3조제4호 및 제5호) | 200,000 | |
| 4.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제3조제6호 및 제7호) | 150,000 | |
|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 (제3조제8호) | 200,000 | |

「○○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포상금 지급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만원

1의2.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5만원

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 Ⅰ. 문제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개정(제13조의2제5항, 2017.1.10. 공포・시행)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다단계 위반, 유가보조금 부정 수급 등을 시・도지사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 대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상한이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신고 또는 고발의 유인을 강화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음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 및 건전한 운송질서를 도모

## 관련 법령

**○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42호, 2016.6.21. 일부개정]**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법 제60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0만원
2. 법 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15만원
3. 법 제60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20만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782호, 2017.1.10. 일부개정]**

제13조의2(신고포상금 지급) ①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고발을 받은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00만원의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기준·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22 노후 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 마련

조례내용

「건축 조례」

(※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 융자 등에 관한 규정 없음)

## Ⅰ. 문제점

○ 「건축법」이 개정(제35조의2제1항,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되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및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노후건축물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없음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주민에게 노후 단독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혜택을 확대

## 관련 법령

**○ 구 건축법 [법률 제13474호, 2015.8.11. 타법개정]**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법률 제14535호, 2017.1.17. 일부개정]**

제35조의2(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3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 확대

조례내용

「경관 조례」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 Ⅰ. 문제점

○ 「경관법 시행령」이 개정(제18조제1항,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되어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 하천시설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경관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를 낮추어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저해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한 경관 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 조성을 도모

## 관련 법령

**○ 구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5358호, 2014.5.22. 타법개정]**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철도시설·도시철도시설 사업
2.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에 대하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심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이하 이 호에서 "기본설계"라 한다)를 완료하기 전에 마칠 것. 다만,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관위원회에서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 사업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가. 도로 사업의 경우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나. 철도시설 및 도시철도시설 사업의 경우 :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다. 하천 사업의 경우 : 「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 소속으로 설치한 경관위원회

**○ 경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921호, 2017.2.28. 일부개정]**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2.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 2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

조례내용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에 관한 조례」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등록기준 완화 규정 없음)

## Ⅰ. 문제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별표 3 제3호, 2017.2.28. 공포・시행)되어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함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등록 규제를 완화

## 관련 법령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84호, 2009.12.2. 일부개정]**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3. 운송 부대시설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406호, 2017.2.28. 일부개정]**

제23조(등록기준 등)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자·전세버스운송사업자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등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조건에 관한 사항, 운행계통의 기준이나 그 밖에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별표3] 3. 운송 부대시설

가. 운송 부대시설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자동차 대수가 1대인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 25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규제 완화

조례내용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영업시설기준 마련 등) 시장·군수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산물을 가공·처리하거나 농산물 가공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영업시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제8조의3,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되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이 마련되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혜택을 받지 못함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지원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

## 관련 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같은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6 개방화장실 지정 시설물 규모 완화

조례내용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Ⅰ. 문제점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제8조제1항, 2017.5.8. 공포, 2018.1.1. 시행)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자발적으로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하는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규제 완화의 혜택을 주민이 받지 못함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이용 확대를 통해 주민의 위생상 편의 증진

## 관련 법령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개방화장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1. 해당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이 출입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방공중화장실의 지정 절차,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 ○ 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4796호, 2013.10.16. 일부개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라 함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8018호, 2017.5.8. 일부개정]

제8조(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이란 법인 또는 개인소유 시설물로서 제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7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하향 조정

조례내용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 Ⅰ. 문제점

○ 동일한 시설물이라 하더라도 지역별 교통여건의 차이에 따라 교통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차이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만 할 수 있었으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 개정(제37조제2항, 2017.10.24. 공포, 2018.2.10. 시행)되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를 통하여 교통유발부담금(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됨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산정 및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

## 관련 법령

**○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4858호, 2017.8.9. 일부개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률 제14944호, 2017.10.24. 일부개정]**

제37조(부담금의 산정기준) ①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이 복합용도일 때 그 바닥면적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담금=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② 제1항에 따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매출액,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상향하거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28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 마련

조례내용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지역자율방재단원에 대한 보상금 규정 없음)

## Ⅰ. 문제점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에 대한 보상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임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제66조 제3항, 2017.10.24. 공포, 2018.10.25. 시행)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상해 등을 입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자율적 방재 기능 강화

## 관련 법령

**○ 구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14912호, 2017.10.24. 일부개정]**

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봉사단체, 방재 관련 업체, 전문가 등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9 수의직공무원 수당 지급 상한 확대

조례내용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 수의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 Ⅰ. 문제점

○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의료업무수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별표 9의 기술분야의 제2호다목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란, 2017.9.5. 공포·시행)되어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수의직공무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시·군의 경우에는 의료업무수당을 월 25만원 초과 월 5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수당 지급 상한을 확대함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수의직공무원의 원활한 충원을 통해 가축방역·검역 행정의 효율성 및 공중위생의 향상 도모

## 관련 법령

**○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7.26. 타법개정]**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다목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150,000원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68호, 2017.9.5. 일부개정]**

별표 9 기술분야 제2호다목

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수의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월 250,000원

(광역시·도의 관할 구역 안에 두는 시·군의 공무원의 경우 월 250,000원 초과 월 500,000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군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30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규정 마련

조례내용

「건축 조례」

제35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와 같다.

1・2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 5회로 한다.

③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일로부터 1년을 말한다.

## Ⅰ. 문제점

○ 「건축법」이 개정(제80조제4항, 2014.5.28. 공포, 2014.11.29. 시행)되어 종전에는 허가권자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건축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었던 것이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로 바뀌었으나,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를 적용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 초래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에 규정하여 이행강제금의 (반복) 부과가 가능함으로써 법령 등을 위반한 건축주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관련 법령

**○ 구 건축법 [법률 제12248호, 2014.1.14. 타법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 ③ (생 략)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구 건축법 [법률 제12701호, 2014.5.28. 일부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 ③ (생 략)

④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건축법 [법률 제14792호, 2017.4.18. 일부개정]**

제80조(이행강제금)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면 총 부과 횟수가 5회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과 횟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Ⅱ



# 주요 분야별 사례

제1장 공유재산・계약 분야

제2장 지방보조금 분야

제3장 기금・특별회계 분야

제4장 가산금・과태료・지방세 분야

제5장 위원회 분야

# 제 1 장

# 공유재산 · 계약 분야

31.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 확대
32.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
33. 행정재산 사용료 미반환 관행 개선
3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35.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36.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
37.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철폐
38.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위한 이자율 조정

# 31 행정재산 사용허가 기간 확대

조례내용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가목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하여 관련 사업자의 불편 발생

## Ⅱ. 개선방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맞게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불편 해소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 32 행정재산 관리위탁 갱신 규정 정비

조례내용

「읍·면·동 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사용료납입, 복지회관시설의 관리, 수탁자 책임계약 담보 및 기타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경신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은 한번만 갱신 가능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수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토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횟수제한이나 평가 여부에 관계없이 갱신할 수 있도록 규정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갱신방법과 절차를 수정하여 지방재산 관리의 적법성 및 효율성 제고

## 관련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33 행정재산 사용료 미반환 관행 개선

조례내용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허가취소에 의한 사용료 반환)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 Ⅰ. 문제점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시 남은 사용료는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조례로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시장 상인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발생

## Ⅱ. 개선방안

○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시장 상인에게 반환하도록 개선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 완화

## 관련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사용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移植)에 필요한 경비
3. 사용·수익허가가 취소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3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조례내용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5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점포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은 시장(市長)이 따로 정한다.

## Ⅰ. 문제점

○ 「민법」상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는데, 조례에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여 손해배상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

## Ⅱ. 개선방안

○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 관련 법령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35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 분배

조례내용

〈유형 1〉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나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천재지변과 악천후 등으로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국가·도나 시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1항 제3호, 제4호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형 2〉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손해배상)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이용자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활동시설 및 부대시설물이 파손이나 붕괴되었을 때에는 이용자가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그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모든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 Ⅰ. 문제점

○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체육시설 사용허가 취소 시 사용자가 입은 손해를 시장이 책임지지 않도록 규정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민법」에 대한 특례 규정

○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는 달리,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모든 민형사책임은 이용자가 지도록 함

## II. 개선방안

○ 지자체도 시설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책임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

**관련 법령**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36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특정단체 우대 규정 폐지

조례내용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회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 3월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Ⅰ.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행정재산 관리위탁의 계약방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행정재산을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행정재산 관리위탁 시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고 다른 주민의 입찰 참여를 제한

## Ⅱ. 개선방안

○ 행정재산을 특정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주민이 행정재산 관리위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37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의 경제활동 제한 철폐

조례내용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에 관한 조례」

제5조(설치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하는 경우
2. 설치허가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
3. 부당한 방법으로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4.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② 제1항에 의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Ⅰ.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등의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조례에서는 법령의 위임 없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가 취소된 자는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여 주민의 경제활동을 제한

## Ⅱ. 개선방안

○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 취소 시 다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에게 공정한 기회 부여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 38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이자율 조정

조례내용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6월 이내 3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 9월 이내 4회 분납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6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 4. (생 략)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 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교환 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의 잔액에 연 2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는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
2.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3.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Ⅰ. 문제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1조 및 제82조, 2016.7.12.공포・시행)되어 종전에는 대부료나 매각대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연 2퍼센트에서 6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이자율을 붙여서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으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음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변상금・과오납금 등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의 이자율 조정하여 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 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교환차금의 납부) ①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2. 교환차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교환차금의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대금의 납부 및 연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한꺼번에 전액(全額)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매각대금을 납부할 자가 재해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3. 한꺼번에 매각대금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주민을 위하여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2. 전원 개발 또는 다목적댐의 건설과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투자사업계획이 승인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자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 및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8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법 제8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말한다.

# 제 2 장

# 지방보조금 분야

39.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사유 개선
40. 법령상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개선

# 39 지방보조금 교부 취소사유 개선

조례내용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 그 후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의 교부결정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은 예외로 한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각급 학교의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③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부결 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제14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 I. 문제점

○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취소사유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등 불명확한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보조사업자의 불편 초래

## II.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외의 사유를 삭제하여, 보조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5조 (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 40 법령상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개선

조례내용

「사회단체 지원 조례」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 운영비 지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기관·단체 등에 운영비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법령의 근거 없이 운영비를 지원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저해 우려

## Ⅱ. 개선방안

○ 법령에 근거 없는 운영비 지원 부분을 삭제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②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제17조제1항에 따른 지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의견을 제출할 때
4.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5. 제32조의7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를 결정할 때

④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이나 법령의 명시적 위임에 따른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이 중복 교부되거나 부적격자에게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지원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등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 3 장

# 기금 · 특별회계 분야

41.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42. 기금 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43. 기금 · 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 확보
44. 기금 ·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 41 기금 운영의 투명성 및 적법성 확보

조례내용

「재정운용기금 설치 조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Ⅰ.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음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 및 적법성 강화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 42 기금 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조례내용

「농수축산물 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기금운용위원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위원은 구 공무원 3명, 구의회 의원 2명, 소비자단체 임원 1명으로 위촉한다.

## Ⅰ.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서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 되지 않음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민간전문가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및 적법성 강화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43 기금·특별회계 운영의 건전성 확보

조례내용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 없음)

「농업인단체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 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2017년 12월 현재, 기금의 존치 필요성 있음에도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개정 없이 기금 운영)

## Ⅰ.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재정법」에서는 기금 및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명시하지 않거나 기존의 존속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를 근거로 기금·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문제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영 도모

## 관련 법령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4 기금 ·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 확대

조례내용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이재민 구호비 지원기준에 의한 지방비 부담금
2. 이재민 구호를 위한 모포, 의류, 취사도구, 세면도구, 주 · 부식류 등 생활필수품 구입
3.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및 구호비(중앙 지원대상인 경우는 선지원 후정산)
4. 비축물자 및 보관창고 설치
5.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6. 의연금품 조작경비

② 구호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법령에서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각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사용이 제한되는 문제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서 규정된 기금 · 특별회계의 사용 용도를 빠짐없이 규정하거나, 해당 기금 · 특별회계의 용도는 상위법령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

## 관련 법령

### ○ 재해구호법

제4조(구호의 종류 등) ① 구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의류·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구호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재민에게 현금을 지급하여 구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구호비용의 부담) ① 제4조에 따른 구호에 필요한 비용은 구호기관이 부담한다.

② 정부는 구호기관이 재해구호를 위하여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 등으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재해구호기금의 적립 등) ① 시·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구호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매년 재해구호기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재해구호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재해구호기금의 용도)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
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보상
4.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사전 집행
5.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
6.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
7. 그 밖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② 시·도지사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재난지원금으로 사전 집행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금액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 및 별표 3의 비고 제1호의 재난지원금 부담률에 따라 보전(補塡)한다.

③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재해구호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내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4 장

# 가산금 · 과태료 · 지방세 분야

45.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철폐
46. 가산금 부과금액 완화
47. 법령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48.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

# 45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철폐

조례내용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제5조(가산금의 징수) ①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가산금(주차요금의 4배)을 부과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차량
2. 주차장 운영시간 종료 후 출차하는 차량으로 요금 납부안내서를 받고 정해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정해진 주차구역내 주차하지 않은 차량이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4. 주차요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입·출차를 반복하는 차량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9조(훼손자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훼손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자가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법률의 위임 없이 사용료 등 체납 시 가산금 부과 규정을 신설

○ 법률에서는 가산금 부과 규정만 있는데, 조례에서 중가산금 부과까지 규정

## Ⅱ. 개선방안

○ 법률의 위임 없는 가산금 규정은 삭제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해소

### 관련 법령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 46 가산금 부과금액 완화

조례내용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 · 징수 조례」

제5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의4제4항에 따라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가한다.

「지하수 조례」

제5조(가산금) 시장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Ⅰ. 문제점

○ 개별 법령에서 가산금 부과 범위가 변경(예컨대, 체납부담금의 100분의 5→100분의 3) 되었으나, 조례에서는 여전히 종전의 부과율을 규정하고 있어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 부담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에 맞게 가산금 부과 범위를 개정하여 주민의 금전부담 완화

## 관련 법령

###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① 부담금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되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1조의3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과된 부담금은 부과일부터 1년 이내에 내야 하되, 납부기한 내에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을 경우에는 그 신청일(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 이전까지 내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사용승인등을 받는 날(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준공완료 공고일을 말한다)까지의 범위에서 분할납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의 착공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라 연기되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사업의 착공 시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로 한다.

⑤ 시・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부담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 ○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하수 취수량,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세부적인 산정방법, 부과・징수 방법 및 납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 47 법령상 근거 없는 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

조례내용

**「도시공원 조례」**

제5조(과태료 부과·징수) 시장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별표 0과 같다.

[별표 0]

과태료 부과 기준(제5조 관련)

| 관련 법령 | 해 당 조 항 | 과태료금액 |
|---|---|---|
| 법 제49조 제1항 | 1.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 10만원 |
| |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7만원 |
| | 3.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의자 위의 것에 한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 7만원 |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5조(과태료) 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
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수리·용접 등을 하는 행위
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

## Ⅰ. 문제점

○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다르게 규정(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과태료 부과액 초과 등) 하고 있어 주민 혼란 및 불편 초래

## Ⅱ. 개선방안

○ 상위법령상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

### 관련 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3.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제56조(과태료) ①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4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제1항에 따

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5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과태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 금액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1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입장료를 징수한 경우 | 법 제56조 제1항 | 800만원 |
| 2.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10만원 |
| 3.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 법 제56조 제2항 | 5만원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제117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2.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 48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

조례내용

「상징물 관리 조례」

제5조(위반 시 조치사항)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9조(훼손자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훼손자가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의 가산금 산정 규정을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할 자가 독촉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생활주변 녹지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7조 규정을 준용한다.
③ 군수는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Ⅰ. 문제점

○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처분을 하려면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나, 법령의 근거 없이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민에게 부담으로 작용

## Ⅱ. 개선방안

○ 법령의 근거 없는 체납처분 규정 삭제

## 관련 법령

### ○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에게 부과를 하는 경우로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납세자에게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그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92조(압류해제의 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2.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의 변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全額)을 현저히 초과할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되었을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하였을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5. 압류한 금융재산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급여금품으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제93조(압류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 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것에 대하여는 압류해제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을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자에게 압류재산을 보관하게 한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보관자에게 압류해제의 통지를 하고 압류재산은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류재산의 보관증을 받았을 때에는 보관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관자에게 그 재산을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인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보관자로부터 압류재산을 수령할 것을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관 중인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압류조서에 영수사실을 기입(記入)하여 서명·날인하게 함으로써 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제94조(체납처분의 중지)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따른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때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승인·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84조를 준용한다.

제96조(결손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7조(사해행위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체납자가 지방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민법」 제406조 및 제407조를 준용하여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 제 5 장

# 위원회 분야

49. 법령상 위원회의 운영 규정 마련
50.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 49 법령상 위원회의 운영 규정 마련

조례내용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 등

(※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이 없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Ⅰ. 문제점

○ 법령에서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아 법령이 집행되지 않는 불합리 발생

## Ⅱ. 개선방안

○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

## 관련 법령

### ○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① 유통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각각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매업·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의 범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50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조례내용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기능) 시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 심의 · 연구 · 의결한다.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 정부에서 하달하는 주요시책의 검토사항
3. 법령 및 조례 · 규칙에 의하여 시 단위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이하 "심의회"라 한다) 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소관사항
4.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의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제3항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울릉군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Ⅰ. 문제점

○ 법령상 지자체에 두도록 의무를 부과한 위원회를 다른 법령상 위원회와 통합·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그 근거가 있어야 하나, 법령상 통합(대행)의 근거 없이 개별 위원회를 임의적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의 행정편의적 집행 우려

## Ⅱ. 개선방안

○ 법령의 근거 없는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을 삭제하여 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 보장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6조(합의제행정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의제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③ 제1항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제32조의3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 부 록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참고)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4.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 부록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소개

## 1.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정비하려고 할 때, 정비사항 발굴 및 정비안 마련 등 관련 지원을 법제처에 요청하면, 이를 지원(2014.3월부터 시행)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요청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하여,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정비과제에 대한 정비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공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제처에서 제공한 정비안을 바탕으로 정비 추진

*** 자치법규 정비과제 발굴 유형 분류**

①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② 상위법령 위반 소지(위임범위 일탈, 상위법령과 불일치 등 포함), ③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권리・의무사항) 신설 ④ 자치법규 입안원칙 위반 ⑤ 기타(인용조문 오류 등) 등으로 분류하여 정비과제 발굴

## 2.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체계

법제처에 정비 지원 요청 (지자체) → 지원대상 지자체 선정 (법제처, 행안부) → 자치법규 전수조사 실시 (법제처) → 정비과제 발굴 및 정비안 제공 (법제처) → 최종 정비안 확정 (법제처, 행안부,지자체) → 자치법규 정비 (지자체)

# 부록2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소개

##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상위법 위반 여부, 입법기술, 자치법규 자체의 해석상 의문에 대해 법제처에 의견을 요청하면 법제처에서 검토의견(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2.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교육감 및 지방의회 의장이 의견제시를 요청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산하기관(예: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은 직접 요청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통해 요청

  *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의견제시 요청 불가

## 3.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방법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여 온나라 공문으로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로 제출(044-200-6761)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양식은 아래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음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 법령·해석정보 / 자치법규 의견제시 안내 / 의견제시 요청서

- 정부입법지원센터(www.lawmaking.go.kr) / 자치입법지원 / 의견제시 요청 / 의견제시 요청서

## [ 참고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건에 관한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체크하여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 체크 | 세부내용 | |
|---|---|---|---|
| 1.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권한이 있는가?**<br>* 자치법규 의견제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및 지방의회(지방의회 의장 명의)만 요청할 수 있고**, 보건소, 상수도사업본부 등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나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및 지방의회 의원 개인 명의로는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 단체장 | ✓ |
| | | 교육감 | |
| | | 지방의회 의장 | |
| 2.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인가?** | ● | 조례 | |
| | | 규칙 | ✓ |
| 3. **의견제시 요청 대상 자치법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가?**<br>*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는(반대 경우 포함)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 | |
| 4. **의견제시 요청대상 자치법규는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안이거나 공포되기 전의 규칙안인가?**<br>*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재의요구된 경우를 포함)나 공포된 규칙에 대해서는 자치법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없습니다. | ● | 입안중 | |
| | | 입법예고중 | |
| | | 조례규칙심사위원회 심의중 | ✓ |
| | | 지방의회 제출 | |
| | | 지방의회 의결 | |
| | | 조례·규칙 공포 | |
| 5.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이 특정되어 있는가?**<br>* 의견제시 요청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조례안 전체에 대한 상위법 위반 여부 등과 같이 질의하거나 질의사항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 | |

| 자치법규 의견제시 요청요건 체크 사항 | 체크 | 세부내용 |
|---|---|---|
| 6. 자치법규 해석요청인 경우에는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령 위반 여부나 구체적인 사실 인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 자치법규의 일반적 해석에 관한 요청인가?<br>* 의견제시 요청시 현행 자치법규의 상위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항이거나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또는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부당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 |

## 1. 질의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질의요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 나 등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 2. 의견제시 대상 자치법규 조문 및 관련 법령

☞ 의견제시 대상이 되는 자치법규의 세부내용과 관계법령을 적습니다.

## 3. 대립되는 의견

### 가. 갑설 / 나. 을설

## 4. 요청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

☞ 의견제시 요청대상에 대해 요청기관의 의견을 적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적습니다.

## 5. 참고자료

☞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법률자문결과 등 관련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첨부'로 적고 별도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부록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소개

## 1.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개념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법제처에 검토를 요청하면, 법제처는 자치법규안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 제공(2015.1월부터 시행)

– 지방자치단체 법제 부서에서는 자치법규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 시, 법제처 검토의견을 "심사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심사

*** 입법컨설팅 내용**

①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범위 일탈 여부 ② 신설되는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③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여부 ④ 다른 조례와의 충돌·모순 여부 ⑤ 조문의 위치·순서 등 체계 ⑥ 용어와 표현의 적절성 ⑦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여부 ⑧ 적절한 부칙을 두었는지 여부 등

## 2.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 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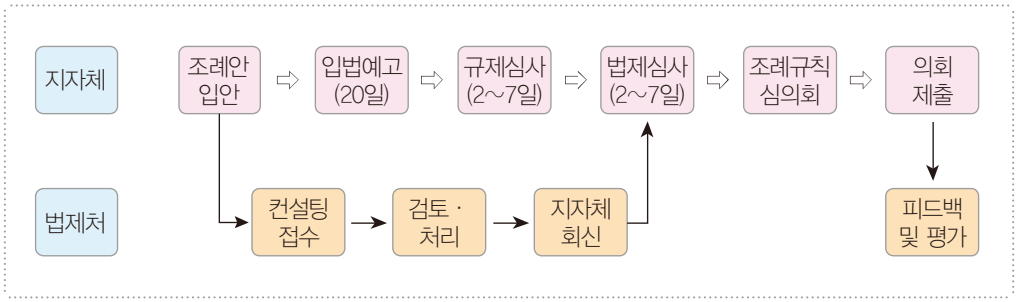


## 3.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지원 개요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법컨설팅 지원을 신청 받아(1월초) 지원 대상 지자체를 선정하고(1월중순), 지방자치단체와 시기 등을 협의한 후 컨설팅을 실시(2월~12월)

–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1년 단위로 입법컨설팅 실시

# 부록4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 일러두기 |
| --- |
| 자치법규 입안체크리스크는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필수사항과 필수사항을 검토할 때 참조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해당 부분을 표시해 둔 것으로,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고려하여야 할 모든 사항을 표시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br>또한, 참조할 수 있는 부분도 직접 관련 부분만 표시해 두었기 때문에 입안분야별 세부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세부기준입안기준 등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

**①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정책 실현을 위해 자치법규가 필요한지 ?**

없다/불필요 | 있다/필요

제1편제2장 3.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 여부 판단 참고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2013년) 기준]

**②상위법령/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가 이미 있는지 ?**

없다 | 있다

제1편제2장 4. 입법형식의 선택, 제3편제2장 자치법규의 개정방식과 폐지방식 참고

자치법규 제정 검토 | 자치법규 개정 검토

**③입안해야할 자치법규와 관련된 사무는 ?**

제1편제3장 1. 소관 사무의 원칙 참고

**판단기준**

≫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제11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령에서 "장관"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개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 경비부담,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에 비추어 국가사무로 볼 수 있는 사무

≫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 포함) 판단기준**

- 「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른 사무
- 개별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기관위임사무
✓자치사무(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자치사무
✓기관위임사무(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규칙 제·개정 검토 | 조례 제·개정 검토

**④제 · 개정하려는 자치법규와 관계된 상위법령이 있는지 ?**

없다

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검토

제1편제3장 2. 법령의 범위 안에서, 3. 법의 일반 원칙 참고
부록4 법령해석의 기준 참고(상위법령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⑤제 · 개정하려는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지 ?**

없다

있다

법령의 위임 여부 및 위임범위 내인지 검토

제1편제3장 4. 법률 유보의 원칙 참고

**⑥집행기관의 권한행사에 의회가 관여하여나 제약하는지 ?**

**판단기준**

≫ 집행기관의 권한이 법령에 의해 전속적으로 부여된 경우 → 법령에 위임규정이 없는 한 집행기관의 권한을 제약하거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 신설 불가

≫ 집행기관의 권한이 조례에 의해 부여된 경우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인 경우 사전적 · 적극적으로 개입하는지(예: 구성원 임명, 추천 등)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이 아닌 경우 그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인지(예: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바꾸는 경우)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 지방의회 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하는 것인지(예: 지방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 → 「지방자치법」 위배 소지

없다

있다

견제와 균형 법리 검토

제1편제3장 5.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 참고

**⑦기존의 제도를 변경하는 조문이 있는지 ?**

없다

있다 → 제2편제3장 6.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참고

경과조치/적용례 검토

**⑧새로 신설되는 제도가 있는지 ?**

없다

있다 → 제2편제3장 6. 적용례, 특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참고

적용례 검토

**⑨법령의 체제와 문장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

→ 제3편제1장 자치법규의 체제, 제3편제3장 법령 문장 작성원칙, 제3편제4장 법령용어 사용원칙 참고

**주요 검토사항**

- ✓ 상위법령의 규정순서를 따르고 있는지/일반적인 법령체계상의 규정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 ✓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일관성이 있는지, 상위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모순되는 점은 없는지?
- ✓ 불명확한 내용은 없는지?
- ✓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의 인용조문은 맞는지?
- ✓ 문장과 용어가 국어어법에 맞는지?
- ✓ 일본식 표현이나 축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⑩제 · 개정문 작성원칙은 준수하고 있는지 ?** → 제3편제5장 제 · 개정문 작성원칙 참고

# 조례 규제개선 사례집

발 행 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주 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7-1동)
전 화: 044)200-6900
F A X: 044)200-6972
발 행 일: 2017년 12월
디자인·인쇄: 에코디자인
044)868-0054